

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4. 7. 15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민 생활 및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편요소 해소를 통한,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, 양질의 도시행정 서비스 제공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조례안 제19조제3호 “마” 목(농지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중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<수직으로 2m이하의 절토·성토·매립·토사의 채취>)을 **현행대로** 함.
- 【별표 13】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중, “카” 목의 숙박시설을 **현행대로** 함.
- 【별표 19】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, “아” 목 중, “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” 를 **현행대로** 함.
- 【별표 23】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, “아” 목 중, “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,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” 를 **현행대로** 함.

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1. 개정 조례안 제19조 제3호 중, “마” 목 “삭제” 를, “농지 안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(단, 수직으로 2m 이하의 절토.성토.정지.매립.토사의 채취에 한한다)” 로,

【별표 13】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중, “카” 목 “삭제” 를, “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” 로,

【별표 19】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, “아” 목 중, “(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” 를, “(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” 로,

【별표 23】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, “아” 목 중, “(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” 를, “(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.)” 로 수정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9조(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) 영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2.<생략> 3. <생략> 가.~라<생략> 마. <u>농지안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(단, 수직으로 2m 이하의 절토. 성토.정지.매립.토사의 채취에 한한다)</u> 4.~6.<생략>	제19조(-----) ----- -----. 1.~2. <현행과 같음> 3. <현행과 같음> 가.~라. <현행과 같음> <u>마. 삭제</u> 4.~6. <현행과 같음>	제19조 <개정안과 같음>. 1.~2. <개정안과 같음> 3. <개정안과 같음> 가.~라. <개정안과 같음>. <u>마. <현행과 같음></u> 4.~6. <개정안과 같음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【별표13】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3조) ※(생략) 가. ~차.(생략) <u>카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</u> 타. < 생략> 파. ~ 러. <생략>	【별표13】 ----- ----- ※ <현행과 같음> 가.~차. <현행과 같음> <u>카. 삭제</u> 타. ~ 더. <현행과 같음>	【별표13】 ----- ----- ※ <개정안과 같음> <u>가.~러. < 현행과 같음></u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【별표19】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(제33조) ※ (생략) 가.~사.(생략) 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(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 자.(생략) (1)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. 이 경우 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할 경우에는 이를 합한면적을 말하며, 연접한 공장의 부지면적과 합하여 10,000㎡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(2) (생략) 차. <차목신설> 카. (생략) 타. ~ 너. (생략)	【별표19】 ----- ----- ※ <현행과 같음> 가.~사.<현행과 같음> 아. ----- (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 자. <현행과 같음> (1)-----. -----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. (2) <현행과 같음> 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(농업.임업.축산업.수산업을 제외한다) 카. <현행과 같음> 타. ~ 더. <현행과 같음>	【별표19】 ----- ----- ※ <개정안과 같음> 가.~사. <개정안과 같음> 아. <현행과 같음> 자. <개정안과 같음> (1) <개정안과 같음> (2) <개정안과 같음> 차. <개정안과 같음> 카. <개정안과 같음> 타. ~ 더. <개정안과 같음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【별표23】 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수 있는건축물 (제33조) ※ (생 략) 가. ~사. (생 략) 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(<u>관광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 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.</u>) 자. (생략) 차. <u>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에 한한다)</u> 카.~너.(생략)	【별표23】 ----- ----- ※ <현행과 같음> 가. ~사. <현행과 같음> 아. -----(<u>관광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 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.</u>) 자. <현행과 같음> 차. ----- <u>(단서조항 삭제)</u> 카.~너. <현행과 같음>	【별표23】 ----- ----- ※ <개정안과 같음> 가. ~사. <개정안과 같음> 아. <u><현행과 같음></u> 자. <개정안과 같음> 차. <u><개정안과 같음></u> 카.~너. <개정안과 같음>